

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소영철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온라인 위해제품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,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위조된 제품 등이 국내로 유통되어 시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위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□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자유통 상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,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유통협약에

불과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, 이후에도 이른바 C-커머스를 중심으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제품, 안전기준 미달 제품, 위조상품 등의 유통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특히 해외 직구 및 통신판매중개 방식의 거래 특성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, 피해 발생 이후 구제 절차도 복잡하여 시민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.
- 이에 본 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·유통되는 위해제품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,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먼저, 조례의 목적과 “온라인 위해제품” 등 핵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 추진의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.
- 다음으로, 시장에게 온라인 위해제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, 위해제품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며,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 하였습니다.

- 또한,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제품에 대한 시험·검사·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, 공표,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이와 함께,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, 시민감시단 운영, 교육,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 운영, 분쟁조정 절차 연계 지원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,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실태 및 피해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, 검사기관, 소비자단체,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 중개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려는 취지입니다.
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이상의 제안서를 바탕으로,

부디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
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